

|      |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|
| 등록번호 | 복지정책과-10417 |
| 등록일자 | 2015.6.17.  |
| 결재일자 | 2015.6.19.  |
| 공개구분 | 대시민공개       |

|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|
| 주무관 | 복지자원팀장 | 복지정책과장 | 복지문화국장 | 부구청장 | 구청장          |
| 성윤미 | 송미영    | 이정희    | 이태목    | 조인동  | 06/19<br>문석진 |
| 협 조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|

『2015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』  
**공동모금회 성금지원 확대 계획**



**서대문구  
복지정책과**

# 『2015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』 공동모금회 성금 지원 **확대** 계획

기존 사업 수행에 따른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『2015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』 성금 모금액을 효율적으로 배분·운영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함.

## I 추진근거

### 추진근거

-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, 공동모금회 저소득시민지원사업 운영지침
- 서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간 업무협약서 (2011.12.6)
- 『2015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』 공동모금회 성금지원 계획 [복지정책과-4060(2015.3.6.)]

## II 추진실적

### 2015년 『따뜻한 겨울나기 사업』 성금모금 및 집행실적 (2015.6월 현재 기준)

| 예 산 액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| 집행액     | 잔액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이월액<br>(2014년) | 2015년<br>사업비    | 계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17,369        | <u>322,283*</u> | 639,653 | 268,584 | <b>371,069</b> |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정 지원사업비 |

\* 2015년 모금액 402,854천원 중 322,283천원 공동모금회 사업비로 사용

- 희망플러스통장사업: 20,142천원, 희망온돌사업: 62,428천원 전환

## ○ 세부 추진 실적

(단위: 천원)

| 구분  |         | 생계지원 |    | 체납지원 |        | 의료지원 |        | 이사지원 |       | 교복지원 |        | 기타<br>지원 |
|-----|---------|------|----|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---|
| 가구  | 가구      | 가구   | 금액 | 가구   | 금액     | 가구   | 금액     | 가구   | 금액    | 가구   | 금액     | 금액       |
| 504 | 288,584 | -    | -  | 127  | 35,163 | 82   | 42,920 | 6    | 1,100 | 283  | 49,400 | 140,000  |

## □ 기존 계획의 수정·보완 필요성

### ○ 낮은 지원기준으로 인하여 실효성 저하

- 현 소득기준 최대생계비 150%이하, 재산기준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
- 서울시복지재단 『희망온돌사업』, 『긴급복지지원사업』, 서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『좋은이웃들 사업』 등 위기가정 저소득주민 지원사업의 소득·재산 기준보다 낮음
- 지원이 필요한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기준으로 인하여,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발생으로 지원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

### ○ 화재 등 재해나 재난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가구에 대한 지원책 부재

- 화재, 산사태,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거주지 소실되었거나 긴급한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책 필요
- ※ 2015. 6. 6 충현동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택 전소에 따른 이재민 5가구 발생 화재로 인해 주거지에서 전혀 살 수 없는 가구에 대한 주거안정화를 위한 지원책의 필요성 대두

### III 추진 계획

#### □ 추진 방향

- 공동모금회 성금 지원기준 완화를 통한 지원의 실효성 확보

| 구 분  | 변경 전          | 변경 후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소 득  | 최저생계비 150% 이하 | 최저 생계비 200% 이하 |
| 금융재산 | 300만원 이하      | 500만원 이하       |

- 화재 등 긴급한 재난으로 인한 위기가구에 대한 “긴급재난구호비” 항목 신설을 통해 위기상황 해소

#### 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5. 6. 18. ~ 2016. 2. 28.
- 지원대상 :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 등 저소득주민 중 소득, 재산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가구

(※ 기초수급자는 긴급생계비, 교복비 지원제외)

- 지원원칙 : 타법률 지원 우선 원칙(기초생활보장법, 긴급지원법, 재해구호법 등)
- 지원기준

- 소 득 : 최저생계비의 200%이하 (단위: 원)

| 가구   | 1인        | 2인        | 3인        | 4인        | 5인        | 6인        |
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소득/월 | 1,234,562 | 2,102,096 | 2,719,376 | 3,336,658 | 3,953,940 | 4,571,220 |

- 재 산 : 13,500만원 이하
- 금융재산 : 500만원 이하 (가구원 명의의 현금, 수표, 어음, 주식, 국·공채 등 유가증권, 적금, 부금, 수익증권 등)

※ 청약저축, 보험(증권)은 제외

- 조사방법 :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조사방법에 준함
  - ※ 기초수급자, 법정차상위 등은 신청자의 소득재산은 행복e음 조사자료 및 소득재산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
    - 단, 행복e음을 통해 파악이 곤란한 가구는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확인.
  - ※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납입영수증으로 확인(최근 3개월분)

## IV 세 부 추 진 계 획

### 1 지원대상자 기준 완화

#### ○ 지원기준

- 소 득 : 최저생계비의 200%이하 (←당초 150%에서 확대)

| 가구   | 1인        | 2인        | 3인        | 4인        | 5인        | 6인        |
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소득/월 | 1,234,562 | 2,102,096 | 2,719,376 | 3,336,658 | 3,953,940 | 4,571,220 |

- 재 산 : 13,500만원 이하 (기존과 동일)
- 금융재산 : 500만원 이하 (←당초 300만원에서 확대)
- 건강보험료 기준

| 가구<br>원수 | 소득기준<br>(최저생계비<br>200%) |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|         |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직장가입자       | 지역가입자   | 혼합      |
| 1인       | 1,235,000               | 37,902      | 16,013  | 38,301  |
| 2인       | 2,102,000               | 64,020      | 52,026  | 64,956  |
| 3인       | 2,719,000               | 82,934      | 82,177  | 83,871  |
| 4인       | 3,337,000               | 102,078     | 108,758 | 103,233 |
| 5인       | 3,954,000               | 121,275     | 133,955 | 122,699 |
| 6인       | 4,571,000               | 139,235     | 153,994 | 141,277 |

- 기준적용개시일 : 2015. 6. 18. ~

## 2 긴급재난구호비 신설

- 지원대상 : 화재, 산사태,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인해 주거의 1/2 이상 소실이 되거나 긴급한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
- 지원금액

| 가구수  | 1 ~ 2인가구 | 3인 이상가구  |
|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지원금액 | 50만원 이내  | 100만원 이내 |

### ※ 긴급생계비와 중복지원 가능

- 지원방법 및 절차
  - 동주민센터 담당자의 상담 및 추천으로 대상 가구 발굴
  - 담당직원 현장 방문 및 상담을 통해 위기상황 신속 파악
  - 사례회의를 통해 지원 결정 후 지원대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

## VI 행정 사항

### 동 주민센터 담당자는 업무계획 숙지 및 적극적 대상자 발굴

- 동 주민센터는 공동모금회 성금지원 계획의 새롭게 바뀐 내용에 대해 철저히 숙지하고 대상자 적극 발굴

### 성금지원 요청 시 구비서류 징구 철저 (재강조)

- 성금지원 신청자의 소득·재산 및 사업별 필요서류 징구 철저

○ 지원요청시 구비서류 : 일반사업

- 성금지원 신청 조사표
- 성금지원대상자 추천 내역서
- 소득·재산관련 서류 : 근로소득원천징수부,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
전·월세 계약서, 미과세증명, 건강보험증 사본,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 
가구원 통장사본(최근 3개월 거래내역서 또는 잔액증명서 등)
- 진료비영수증, 진단서, 입·퇴원 확인서, 사보험 증권
- 기타 지원사업에 따른 서류 등(체납증명, 이사비 영수증 등)

붙임 1. 성금지원 신청 조사표

2. 성금지원대상자 추천 내역서.     끝.